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4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6.20.~ 2022.06.26) -

June 27,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ble>
<tr><th>부처</th><th>내용</th><th>일시</th></tr>
<tr><td>과학
기술정보
통신부</td><td>

• <u>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확산 사업 본격 착수</u>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확산을 위한 "2022년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기로 함

*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대중소 기업 협력형 사업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PC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이용 패러다임이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구독"하는 방식인 클라우드로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소프트웨어를 구매·구축하는 방식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황임

* 국내 소프트웨어기업 25,188개('19년)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은 780개('20년)
('20년 정보통신기술실태조사, '21년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 2022년 클라우드 플래그십 산업분야별 주요서비스 및 기대효과 >

<table>
<tr><th>산업분야</th><th>개발·전환·고도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th><th>기대효과</th></tr>
<tr><td>디지털워크</td><td>협업도구
(메신저, 화상회의 등),
자원관리
(ERP, CRM 등)</td><td>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로 업무 생산성 향상, 소통 및 협업 강화 등 업무 환경 개선</td></tr>
<tr><td>디지털헬스</td><td>건강관리, 의료지원</td><td>의료기관 내 대면 최소화 지원 및 개인의 질병예방·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td></tr>
<tr><td>지능형물류</td><td>물류 프로세스 자동화</td><td>최적화된 운송 경로 탐색 및 자동화된 물류프로세스로 정확도 향상 및 운송비 절감</td></tr>
<tr><td>스마트제조</td><td>생산공정(전자분야)
지능화·자동화</td><td>원격제어, 이상동작 탐지, 예지 정비 등을 통한 중소 제조 환경의 비대면·효율화 개선</td></tr>
<tr><td>환경·
에너지</td><td>에너지효율화, 자원순환</td><td>에너지절감, 지속가능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서비스 개발로 환경 전반의 문제 개선</td></tr>
</table>

</td><td>2022-
06-20</td></tr>
</table>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민·관 합동으로 추진 제안** ②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및 「범부처 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 법적근거 마련 필요** ③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한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 연내 발표** 등이 있음	2022- 06-22
금융 위원회	•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②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③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④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 마련**	2022- 06-17

<table>
<tr><th>부처</th><th>내용</th><th>일시</th></tr>
<tr><td>금융
위원회</td><td>

•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를 개최하고 크게 3가지 사항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상대응 점검체계(상시 금융시장점검 +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확대·운용

②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마련하여 부문별 중점 점검

③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마련 추진

<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 >

<table>
<tr><th colspan="2">주요 리스크</th><th>대응 현황</th></tr>
<tr><td rowspan="3">금융시장</td><td colspan="2">◈ 금융시장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통해 상시 점검</td></tr>
<tr><td>① 기업 자금시장 경색</td><td rowspan="2">▶ 일일 금융시장 점검 및 금융리스크 대응 TF 등을 통해 상시점검 중</td></tr>
<tr><td>②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td></tr>
<tr><td rowspan="6">금융업권</td><td colspan="2">◈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부문별 취약요인 중점 점검</td></tr>
<tr><td>③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td><td>▶ 5·6월 금융리스크 대응 TF 점검
▶ 동향 및 규제준수 현황 모니터링 지속</td></tr>
<tr><td>④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td><td>▶ 5월 금융리스크 대응 TF 점검
▶ 업권별 모니터링 지속</td></tr>
<tr><td>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위험</td><td>▶ 5월 금융리스크 대응 TF 점검
→ RBC 완충방안 마련(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6.9일)</td></tr>
<tr><td>⑥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 유동성 부족 위험</td><td>▶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방안 제도화 추진 중
* 7월 금융리스크 대응 TF에서 논의 예정</td></tr>
<tr><td>⑦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손실 위험</td><td>▶ 6월 금융리스크 대응 TF 점검</td></tr>
<tr><td rowspan="4">실물경제</td><td colspan="2">◈ 관계부처·기관 공조하에 대응방안 마련·추진 중</td></tr>
<tr><td>⑧ 가계부채 리스크</td><td>▶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발표*(6.16일)
*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td></tr>
<tr><td>⑨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td><td>▶ 제2차 추경 포함·발표*(5.29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저금리 대환 등
▶ 세부 프로그램 마련 중(하반기 중 시행 예정)</td></tr>
<tr><td>⑩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td><td>▶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발표(6.16일)
▶ 후속조치 진행 중</td></tr>
</table>

</td><td>2022-
06-23</td></tr>
</table>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문화체육 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6. 21. 시행, 제16조의2 제1호 나목은 2023. 1. 1. 시행 예정) 인터넷게임물 이용에 대한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가 구매하는 가상현금이나 게임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게임산업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022-06-21
보건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6.22. 시행) 효율적인 폐업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문 절차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8605호, 2022.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려는 경우 말소 예정 사실을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는 한편,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숙박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 범위를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하며,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목욕장 남녀 동반 입장 제한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임	2022-06-2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6.22.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민·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 이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 선정방법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대상 확대 (제14조의2제1항)**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협의하도록 협의 대상을 확대함 **② 민·관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자본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③ 민·관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민간참여자의 선정 (제25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대상 지역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022-06-21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 의견 제시기간 : 6/20(월)~6/21(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2-06-20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 의견 제시기간 : 6/20(월)~6/21(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2-06-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며, 타인의 불법토지점유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촉진하기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안 제2조의4)** – 2022년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발생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함 **②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안 제4조제1항제5호)** –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그 미분양 주택을 5년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함 **③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안 제4조의2제3항제3호)** – 타인의 불법토지점유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④ 민간건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 조정 (안 대통령령 제31447호 부칙 제2조)** – 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촉진하기 위해 2021년 2월 17일 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2021년 2월 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을 통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조정함 ※ 의견 제시기간 : 6/24(금)~7/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로 제출	2022-06-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안 제4조제2호)**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5년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함 ※ 의견 제시기간 : 6/24(금)~7/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로 제출	2022-06-24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개편 (안 제155조의3)**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특례요건 중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일부 삭제 –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 –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의견 제시기간 : 6/24(금)~7/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로 제출	2022-06-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 재정부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요건 합리화 (안 제92조의2제2항제1의13호)** –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 이하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함 ②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92조의2제4항제6호)**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의견 제시기간 : 6/24(금)~7/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로 제출	2022- 06-24
산업통상 자원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년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정의"를 확대 ①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정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 의견 제시기간 : 6/22(수)~8/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로 제출	2022- 06-2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음 동 법률의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17조 신설)**	2022-06-17
정무 위원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2018년에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리고 현재까지도 은행은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여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제2항 등)**	2022-06-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 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②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제1항)** **③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함 (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제4항)** **④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안 제24조제3항·제4항)**	2022-06-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데이터 경제가 국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이 필요한 영역에 맞게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용정보를 데이터로서 공유 및 결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등)**	2022-06-2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고령자는 디지털금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노화에 따른 한계, 정보통신 이용능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나, 고령사회에서 금융소비자로서 주요 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고령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에 원금손실이나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등 불이익한 사항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하며 그 이해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및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 등)**	2022-06-22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최근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을 이용한 행위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테라·루나 사태에서와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및 처벌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2022-06-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관세법」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환전마진(수수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환전 시 통상적으로 환율우대를 적용받는 점, 수입업체가 기 보유하던 외화예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 수입대금 원화결제가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한편 개별세법 중 「관세법」만 유일하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또한 과세환율로 기준환율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 (안 제18조)**	2022-06-2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 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3항 신설)**	2022-06-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10 신설)**	2022-06-1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 내 3천 킬로와트 이하로 분할신청(쪼개기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행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음 이에 **발전사업의 분할신청(쪼개기 신청)을 방지하여 발전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7항 신설)**	2022-06-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이벤트산업 발전법안(도종환의원 등 11인)」** 현재 '이벤트'라는 용어는 박람회, 스포츠, 문화공연, 축제, 기업행사, 기념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벤트 및 이와 관련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벤트'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임 또한, 이벤트산업의 경우 단기적이고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이벤트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의 부재로 이벤트산업 안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이벤트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벤트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이벤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벤트산업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이벤트산업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이벤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벤트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소이벤트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이 발주하는 이벤트사업에 중소이벤트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대기업인 이벤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8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벤트산업의 현황, 연구동향 등 이벤트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이벤트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이벤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홍보,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이벤트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12조)**	2022-06-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환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전환은 필수불가결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일자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함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중에 있으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를 일자리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이에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전환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함 (안 제3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4조)**	2022-06-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④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안 제6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안 제8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안 제9조)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10조)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굴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직무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안 제11조)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 고용개선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2조)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5조) ⑪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함 (안 제16조)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28(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97호 발간 - 프랑스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예산정책처	6/29(수)	「NABO 경제동향」 6월호 발간	
	6/30(목)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발간	
입법조사처	6/28(화) 07:30	제18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모빌리티의 미래, 세상의 변화	ZOOM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7(월) 14:00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조승래 의원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6/27(월) 14:00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	이용우 의원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7(월) 14:00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8(화) 10:00	국회 「모빌리티 포럼」 4차 세미나 -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모빌리티 포럼」, 권성동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6/28(화) 10:00	NEXT K콘텐츠리더 애니메이션 NEW 정부의 과제는?	김승수·유정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8(화) 10:00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	최인호·이양수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9(수) 14:30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성일종 의원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6/30(수) 09:30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30(수) 10:00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	장철민·강준현· 조오섭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금) 14:00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남인순·신현영· 최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4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20(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6호 발간 -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	도서관 1회의실
	6/21(화)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8호 발간 -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등	
	6/21(화)	「현안입법 알리기」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근거 마련	
	6/22(수)	「현안, 외국에선?」 제38호 발간 -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 (미연방 산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입법조사처	6/20(월)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0(월) 14:00	달라진 시대,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토론회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1(화) 10:00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GHz 정책 방향 토론회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1(화) 10:00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조해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1(화) 14:0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경쟁	설훈·진선미 의원실,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2(수) 07:30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前국무총리에게 듣는다!	김기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4(금) 13:30	제3차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김민철 의원실, 경기도 인수위원회	경기북부 청사 2층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